



미네르바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15458] <http://mocom.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21,11,1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1,11,16] mocom50@naver.com

[미네르바]

정 보 공 개 서

[(주)모ک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15 .

[(주)모کم]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노원구 심밭로40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70-8667-166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739-997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가맹사업본부 070-8667-166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8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13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2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2-33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4-35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6-37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8-39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9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모کم	미네르바 외1개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40			
	법인 설립등기일 ^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7,30.	2020,08,01	최해용 최보미	070-8667-1660	02-739-9971
	법인등록번호	110111-7572830	사업자등록번호	105-88-1722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최해용 (주)모کم테크	월곡시 외 6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92번길 108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해용	02-739-9968	02-739-9971
대표이사	최해용 (주)모کم	미네르바 외1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40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해용	070-8667-1660	02-739-9971
대표이사	최보미 (주)모کم	미네르바 외1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40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보미	070-8667-1660	02-739-9971
사내이사 (비상근)	이인순 (주)모کم	미네르바 외1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40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인순	070-8667-1660	02-739-9971
사내이사 (비상근)	최진현 (주)모کم	미네르바 외1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40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현	070-8667-1660	02-739-9971
사내이사 (비상근)	구본승 (주)모کم	미네르바 외1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40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현	070-8667-1660	02-739-997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없음"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미네르바]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①	미네르바	실내독서실, 스터디카페
상 호 ^②	미네르바 OO점	가맹점명칭은 보통 해당지역명을 사용
상표(서비스표) ^③	 미네르바	상표출원번호:상표-2021-0223139 상표출원일자: 2021년11월03일 특허출원번호:특허-2021-0106581 특허등록번호: 특허-1023510940000 특허등록일자: 2022년01월14일 (개인용 영상부스)
광 고 ^④	 미네르바	상표출원번호:상표-2021-0223139 상표출원일자: 2021년11월03일 특허출원번호:특허-2021-0106581 특허등록번호: 특허-1023510940000 특허등록일자: 2022년01월10일 (개인용 영상부스)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0,623	115,965	-5,342	113,532	-5,321	-8,637
2022년	147,050	111,325	35,725	12,382	-7,504	1,068
2023년	165,291	127,813	37,478	142,120	6,838	1,751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해용	대표이사	1988.1.~1994.12.	한국맥도날드 기획 전무	가맹사업
			2001.1.~현재	(주)모컴테크 대표이사	가맹사업
			2020.7.~현재	(주)모컴 대표이사	가맹사업
	최보미	대표이사	2020.7.~현재	(주)모컴 대표이사	가맹사업
	이인순	사내이사 (비상근)	2020.7.~현재	(주)모컴 이사	가맹사업
	최진현	사내이사 (비상근)	2020.7.~현재	(주)모컴 이사	가맹사업
	구본승	사내이사 (비상근)	2020.7.~현재	(주)모컴 이사	가맹사업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3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주)모컴테크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월국시(등록번호 : 20191237)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업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스크린 스타디움(등록번호: 20191233)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업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타겟 골프(Target Golf) (등록번호:20191231)라는 영업표지의 스포츠관련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컬링당구 (등록번호:20191229)라는 영업표지의 스포츠관련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스크린 만화방(등록번호 : 20191230)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서비스업 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스크린 댄스방 (등록번호:20191236)라는 영업표지의 스포츠관련 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11.21 ~ 현재	모컴 플렉스 (등록번호:20191235)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서비스업 사업 경영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주)모컴	가맹사업 경영	2021.11.16 ~ 현재	미네르바(등록번호: 20215458)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서비스 관련 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1.11.16 ~ 현재	코인탑골프(등록번호: 20215174)이라는 영업표지의 스포츠관련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	-------------------	------	-------------	-----	------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신청 자)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미네르바 (상표권)	상표사용	2021.11.03. 출원	출원 상표2021-0223139 40-1395383-00-00	최해용	(2021,11,03~ 2026,12,30)
개인용 영상부스	특허사용	2021,08,12 출원 2022,01,10 등록	출원 특허2021-0106581 등록 1023510940000	최해용	(2021,11,03~ 2026,12,30)

본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상표 및 특허사용에 대한 승낙을 하여함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미네르바] 가맹사업 현황

1. [미네르바] 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직영점을 시작하지 않음)

2. [미네르바]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모컴	미네르바	최해용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노원구 삼발로40

**** 가맹계약체결사실이 없습니다.**

3. [미네르바]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네르바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미네르바(실내독서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미네르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미네르바] 가맹점 수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6. [미네르바]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미네르바]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①	가맹점/직영점의 수 ^②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모컴 최해용	코인탑골프	20215174	서비스	0/0	0/0	0/0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①	가맹점/직영점의 수 ^②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모컴테크	타겟골프	20191231	스포츠관련	0/0	0/0	0/0
	(주)모컴테크	컬링당구	20191229	스포츠관련	0/0	0/0	0/0
	(주)모컴테크	스크린스타디움	20191233	기타외식	0/0	0/0	0/0
	(주)모컴테크	스크린댄스방	20191236	스포츠관련	0/0	0/0	0/0
	(주)모컴테크	스크린만화방	20191230	기타서비스	0/0	0/0	0/0
	(주)모컴테크	모컴플렉스	20191235	기타서비스	0/0	0/0	0/0
	(주)모컴테크	월국시	20191237	한식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미네르바]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③.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8. [미네르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미네르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 없음”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미네르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관리지역 ^②	상호/명칭 ^③	주 소		
해당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④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⑤	가맹금 수령권한 ^⑥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미네르바]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8]쪽을 참고하십시오.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광고						
판촉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공릉역지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073	02-949-483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IBK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모컴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		내용
인터넷이용시	기업은행 계좌있는 사업자	- 인터넷(기업은행 http://kiup.ibk.co.kr) 가입 후 로그인→증명서/기업지원→가맹금 인터넷예치서비스→가맹점사업자→약관 및 가맹점사업자 정보입력 후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가입완료→가맹점입금계좌번호로 입금
	기업은행 계좌없는 사업자	- IBK 기업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진행
영업창구 이용시		-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IBK기업은행방문→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계약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 가맹금 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 가맹금 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모کم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②	조치일자 ^③	조치내용 ^④
해당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해당없음”

원고 ^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해당없음”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네르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잔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내역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9,900]			
가입비	1. 가입비 2. 점포개발 및 실사 대가 3. 개점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 4.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	4,400	계약 체결 후 3일이 경과할 때까지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비용
개점행사 및 개업지원	개점행사 및 관촉물	3,300	개점 전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개점행사를 위해 소요된 소멸성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2,200	개점 전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비용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내역	금액(단위:천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3,000 (부가세 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900
가입비	4,400
교육비	2,200
개점행사/개업지원	3,300
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 4-1)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3.3㎡당 금액 ^④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⑤
미네르바 시스템 세트	(주)모컴 및 협력업체(미정)	108,000	2,700	계약 체결 시 50% (공사시작 전)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세미나실	(주)모컴 및 협력업체(미정)	6,000	150	40% (중도금, 설비 입고 전)		
매장홀 시스템 (1 매장당)	(주)모컴 및 협력업체(미정)	3,600	90	10% (잔금,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인테리어공사 (40평기준)	(주)모컴 및 협력업체(미정)	48,000	1,200			
총액		165,600	4,140			
별도금액	(주)모컴 및 협력업체(미정)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공조시설, 소방시설, 간판, 전기증설, 통신시설(vpn, 인터넷, 전화), 가구, 주방시설, 전자제품, 싸인물 등				매장상황 및 점주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 표의 면적당 3.3 m²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m²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 면적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 들지 않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가맹점 개설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기획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상기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4-2)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 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 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①	선정 기준 ^②
가맹 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①	계약·채용 기준 ^②
가맹점사업자	본사의 경영마인드 이해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미네르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없음”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납부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④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의 10%	익월 15일	“아래참조”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을 참고해주세요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을 참고해주세요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 용	가맹본부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해주세요		점포환경개선 전/후에는 반환불가	
POS사용료	협력업체 (미정)	월 22	업체 기준에 따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본부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 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개설 전으로 “해당없음”

구분 ^① (기준: 2023년)	내용 ^②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③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④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4) 귀하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로열티]를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월 지급액(VAT포함)	세부내용
로열티	매장 총 매출액의 10%	매장 총 매출액이란 식음료의 매출을 제외

	한 순수 독서실 의 매출
로열티 내역	미네르바 상표, 특허 사용권리, 영업지역 보호, 미네르바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 레이드 등

- 위 로열티는 귀하의 매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게임 매출액을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당사와 귀하가 합의한 정산시스템(당사가 지급하는 POS 및 정산 프로그램 등)의하여 익월 15일에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단 평균 카드수수료 제외하고 지급하며, 카드수수료는 변경 될 수 있다.) 또한 당사는 물가상승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로열티 지급률을 인상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미네르바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

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 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미네르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미네르바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미네르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②		구분 ^③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2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미네르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계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미네르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 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②	금액 ^③	비고 ^④
	해당없음				
계					

2) 당사는 [미네르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 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미네르바 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원 부재료 및 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 및 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 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물품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상품명		권장판매가	상품설명	비 고
당일이용권	1 시간	2,000	당일만 사용가능	
	2 시간	3,000		
	4 시간	5,000		
	5 시간	7,000		
	8 시간	9,000		
시간패키지	50 시간	60,000	사용시간 만큼 차감 (사용기간 6개월이내)	
	100 시간	110,000		
기간이용권	1주	40,000	기간동안 자유이용	
	2주	70,000		
	4주	120,000		
	야간 2주	45,000	22:00~08:00	
	야간 4주	70,000	22:00~08:00	
세미나 룸	1시간	7,000		
사물함	2주	6,000		
	4주	10,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실내독서실 (스터디카페)	미네르바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인구 1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사는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점포의 추가설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거나 역세권, 중심상가지역, 특수상권 등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
-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미네르바’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미네르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가맹사업 시작 전으로 “해당없음”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미네르바]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단위로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인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37조 2항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7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7조 4항
○ [미네르바]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7조 5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7조 6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0조 1-1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0조 1-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중 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0조 1-3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0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30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조 1-6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6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조 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0조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1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8조 2-2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8조 2-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u>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8조 2-4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2-5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2-6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8조 2-7
○ 가맹점사업자가 <u>뚜렷이</u>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u>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u>	38조 2-8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8조 2-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원-부자재의 공급가격이 변동이 있는 경우	27조 1항
○ 영업지역의 범위를 재조정할 경우	12조 1,2항
○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의 조정	19조 1,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 기간까지 계약수정을 유보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여부 통지 → 승인한 경우승인통지일로부터(7)일 이내에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가맹본부 (070-8667-1660)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 지지만,가맹사업자의상속인은 가맹점영업을 상속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 또는 종료된 후 2년동안 자기 또는 제3자 명으로 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업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영업양도의 경우 건전한 상거래와 가맹점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가맹점의 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의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 실내독서실 미네르바 가맹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당사와 동일한 형태의 실내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서비스판매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미네르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점포여건에 따라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본부와 협의하여 시간조정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 시간대에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 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②	대체 가능 인력 ^③	비고 ^④
점주자율	직접 근무	당사교육을 이수한자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미네르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 고	지역단위	브랜드광고	광 고 비 의 40%	광고비의 60% / 가맹점사업 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 부담 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 지 받은 날 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전국단위	가맹점모집광고	100%	-	-
판 촉	지역단위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	40%	60%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판촉1개월 전) → 행사 시행일 이후 14일 이내 납입
	전국단위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	50%	50%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
에 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 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당사는 가맹점사업

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 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별 사유	관련 계약조건
가맹사업자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40 조(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오천만원(W5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1항
가맹사업자가 제 27 조 (원 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및 제 28 조 (원 부재료 등의 직접조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오백만원(W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2항
가맹사업자가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오백만원(W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3항
가맹사업자가 제 39 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해지 후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 일 금삼십만원(W300,000 원)씩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4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5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6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 ~ 49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계약체결일 14일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9 ~ 3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5	
가맹금 예치	- IBK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35(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5 ~ 34(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5~34(2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4 ~ 4(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3차에 걸쳐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미네르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미네르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 및 교육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미네르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3일	2,200	최초 개점 전
정기/부정기	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개점 후

3. 교육·훈련의 주체

귀하는 개점 전 교육 및 연수에 대하여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실제 운영자가(위탁,대리경영인 포함)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자로 하여금 변경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 귀하 이외에 1인 이상을 추가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점포 운영자나 위탁, 대리경영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추가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의 개점일 전까지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가맹자 자격이 부여되며(위탁, 대리경영인 포함). 본 정보공개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 제9조에 따른 가맹점 경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 사 가맹본부(070-8667-16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mocom.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재무제표 현황 (별첨 1)

붙임: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별첨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